

## '14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

### ○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한 시간보상수당 권역 확대

- 영남권 출강 강사 시간보상수당 지급(2권역 확대)

- 1권역 : 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, 전남, 전북, 광주

- 2권역 : 서울, 인천, 경기, 제주, 강원, **대구, 경북, 부산, 울산, 경남**

### ○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(FT) 수당 지급기준 개선

- 별도 기준 신설, 1·2급간 수당 격차 조정

구분	대상	지급기준	지급액
1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의 역량교육 경력자</li> <li>전·현직 4급 이상 공무원</li> <li>대학 및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</li> <li>기업 간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1시간 15만원</li> <li>초과 매시간 12만원</li> </ul>	75만원 <b>(12.4만원 ↓)</b>
2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역량교육 경력자</li> <li>전·현직 5급 이하 공무원</li> <li>대학교 조교수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1시간 13만원</li> <li>초과 매시간 10.4만원</li> </ul>	65만원 <b>(10.4만원 ↑)</b>
3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역량교육 경력자</li> <li>대학 조교수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1시간 11만원</li> <li>초과 매시간 8.8만원</li> </ul>	55만원

### ○ 취미소양 출강강사 등급 기준 변경

- 취미소양 출강강사 등급 최대 3급으로 상한 설정(3급 신설)

- '15년 이후로 신규 출강 취미소양 강사는 4급 부여

※ 기존의 취미소양 2급 강사는 '15년 말까지 해당 등급을 유지하고, '16년부터 출강하는 모든 취미소양 강사는 3~4급을 적용

## 2015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

### 1 강사수당 지급기준

가. 일반강의 강사수당

구분	대상	지급액
특별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·현직 장관(급)</li> <li>전·현직 대학총장(급)</li> <li>전·현직 국회의원</li> <li>전·현직 광역자치단체장</li> <li>대기업 총수(회장)</li> <li>국영기업체 사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1시간 40만원</li> <li>초과 매시간 30만원</li> <li>시간보상수당 30만원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·현직 차관(급)</li> <li>전·현직 기초자치단체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1시간 30만원</li> <li>초과 매시간 20만원</li> <li>시간보상수당 20만원</li> </ul>
일반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</li> <li>전·현직 지방의회의원(의장 포함)</li> <li>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, 언론인</li> <li>정부출연 연구기관장</li> <li>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, 중역</li> <li>판검사 및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</li> <li>전·현직 3급 이상 공무원</li> <li>박사학위를 소지한 전·현직 4·5급 공무원</li> <li>컨설턴트(석사학위이상 소지자)</li> <li>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·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1시간 25만원</li> <li>초과 매시간 12만원</li> <li>시간보상수당 12만원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</li> <li>전·현직 4·5급 공무원</li> <li>중소기업체 임원급</li> <li>기업·기관·단체의 부장급</li> <li>정부출연·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</li> <li>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</li> <li>원어민 어학 강사</li> <li>기타 전문가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1시간 13만원</li> <li>초과 매시간 8만원</li> <li>시간보상수당 8만원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·현직 6급 이하 공무원</li> <li>외국어, 전산 등 강사</li> <li>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지방행정연수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1시간 8만원</li> <li>초과 매시간 5만원</li> <li>시간보상수당 5만원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1시간 7만원</li> <li>초과 매시간 4만원</li> <li>시간보상수당 4만원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1시간 5만원</li> <li>초과 매시간 3만원</li> <li>시간보상수당 3만원</li> </ul>

- ※ 세미나, 심포지엄, 패널토의 기초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
- ※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
- ※ 맞춤형현지방문 교육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
- ※ 시간보상수당은 연수원 이전에 따른 원거리 출강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1일 1회 해당 권역(4-가)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해 지급
- ※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, 기타 특강, 일반강좌,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
- ※ 기존의 취미소양 2급 강사는 '15년 말까지 해당 등급을 유지하고, '16년부터는 3~4급을 적용

#### 나. 퍼실리테이터(FT) 수당

기준	대상	지급액
1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의 역량교육 경력자</li> <li>전·현직 4급 이상 공무원</li> <li>대학 및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</li> <li>기업 간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1시간 15만원</li> <li>초과 매시간 12만원</li> </ul>
2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역량교육 경력자</li> <li>전·현직 5급 이하 공무원</li> <li>대학교 조교수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1시간 13만원</li> <li>초과 매시간 10.4만원</li> </ul>
3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역량교육 경력자</li> <li>대학 조교수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1시간 11만원</li> <li>초과 매시간 8.8만원</li> </ul>

#### 다. 사이버교육 강사수당

기준	지급 요건	지급액	한도 기준
답변 실적	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	2만원/건	최대 10만원
지도 실적	학습 방향 제시, 관련 자료 제공 등	2만원/건	최대 10만원

- ※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, 유사·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
- ※ 지도 실적의 경우,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,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

#### 라.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

교육 구분	지급 요건
외국공무원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</li> <li>※ 단, 시간보상수당은 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</li> </ul>
해외 현지방문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</li> </ul>
토론식 세션,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60% 지급</li> <li>※ 단,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% 지급</li> </ul>

#### 마.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

구분	실적 기준	지급액	한도 기준	비고
대면지도	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	일반강사 수당 지급기준 준용	4시간 범위	-
온라인지도	질의에 대한 답변	1만원/건	최대 20만원	자기주도학습의 날~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
	연구과제 추진지도	2만원/건	최대 20만원	

#### 바. 자문 및 심사수당

구분	실적 기준	지급액
자문수당	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/F 자문 역할 수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1시간 10만원</li> <li>초과 매시간 10만원</li> </ul>
	E-mail, 서면 자문 요청 시	• 1회당 10만원
심사수당	내용 심사수당	• 1부당 2만원
	발표 심사수당	• 시간당 6만원

※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%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

## 2 원고료 지급기준

#### 가.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

기준	세부 요건
대상자	•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
대상원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</li> <li>각종 세미나,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</li> </ul>
지급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</li> <li>강사 1인에 대한 1주(5일)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</li> </ul>

※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

## 나. 원고 규격별 지급액

원고 형식	지급 규격	지급액
A4 용지	• 글자크기 13p, 줄 간격 160%, • 상하여백 15, 좌우여백 25, 머리말·꼬리말 15	1면당 13,000원
	• 1면 기준 300단어	1면당 13,000원
파워포인트	•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	2면당 13,000원
원고지	• 200자 원고지 3.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	3.5매당 13,000원

※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%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

## 다. 기타 원고 지급비율

구분	기준	지급 비율
기존 원고 활용	30% 미만 수정	미 지급
	30~70% 미만 수정	50% 지급
	70% 이상 수정	100% 지급
A4 용지 1/2 이하	20줄 1면으로 환산	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
200자 원고지 5행 이하	10행을 1매로 환산	
참고문헌,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		30% 지급
복사물, 표지, 목차, 간지		미 지급

## 3 여비보상 지급기준

### 가. 지급대상 및 지급액

지급 대상	지급액
전북 지역 외래강사	• 2만원 (관용차량 이용 시 50% 지급)
전북 지역 외 외래강사	•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준용
현지방문교육 강사	• 【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】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
외국공무원교육 강사	•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준용

※ 단, 외국공무원교육(KOICA 등 위탁교육 포함) 강사의 경우, 제한적 인력풀(희소성), 강사 초빙의 적시성, 지리적 여건(접근성)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

### 나. 대체지급

-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

## 4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

### 가.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한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

권역	지역 구분	지급 여부
1권역	대전, 충북, 충남, 세종, 광주, 전북, 전남	미 지급
2권역	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, 대구, 경북, 부산, 울산, 경남, 제주	지급

### 나. 강의시간 산출기준

강의 시간	1시간 이하	1시간 초과 ~ 2시간 이하	2시간 초과 ~ 3시간 이하	3시간 초과 ~ 4시간 이하
산출기준	1시간	2시간	3시간	4시간

### 다.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(현대·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)

강의 시간	출강 인원	지급액
2시간 미만	5인 이하	50만원
	6인 이상 ~ 10인 이하	70만원
	11인 이상	90만원
2시간 이상	5인 이하	70만원
	6인 이상 ~ 10인 이하	90만원
	11인 이상	110만원

※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

### 라.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

과정	수강 인원	할증률
1개 과정	100인 이상 ~ 250인 미만	20%
	250인 이상	30%
2개 이상 과정 합반	250인 미만	20%
	250인 이상	30%

※ 할증률은 시간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

### 마.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

-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(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)
- 교육내용은 같으나,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(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)

## 5 통·번역료 지급기준

교육 구분	지급 요건
외국공무원교육	•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
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·중 세미나	• 한국외국어대학교 통·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※ 단,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

## 6 시험관리비

구분	단위	지급액	비고	
출제비	객관식	문제당	3,000원	
	주관식	과목당	45,000원	*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
	주관식 단답형	문제당	3,000원	
주관식 채점비	기본료	10부까지	50,000원	
	초과 논술형	1부당	2,000원	
	초과 약술형	1부당	800원	
문제선정 심의비	과목당	45,000원		
문제편집·편찬비	일당	10,000원	*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	
녹음편집수당	일당	30,000원		
시험 감독비	일당	평일 20,000원 휴일 30,000원	*원내직원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직원 만 지급 • 2시간 이상 100% 지급 • 1시간 이상~2시간 미만 80% 지급 • 1시간 미만 50% 지급	
면접·실기 채점비	일당	40,000원		